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6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민형배·정준호·김문수

이훈기 • 이재강 • 이정문

남인순 · 정성호 · 박지원

문정복 • 윤후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,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(CPI)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 위(63점) 수준입니다.

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.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 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,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.

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,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 교육·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.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,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3조의2,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) ① 부패방지와 시민의 권익향상교육 및 연구·개발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두고,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

- ② 국가청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공직자(제2조제3호다목을 포함한다),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
- 2.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 지원
- 3.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- 4. 부패방지 교육에 필요한 연구·개발 및 조사
- 5. 부패방지교육 관련 국제협력 사업
- 6. 그 밖에 국가청렴교육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·개발을 수행하기

위하여 국가청렴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④ 국가청렴교육원의 조직,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1조의3을 제81조의6으로 하고,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1조의3(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초 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초·중등학교"라 한다)의 부패방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교육이 초·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·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·인력·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1조의4(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지원) ① 위원회는 기업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1조의5(국제협력의 촉진) 위원회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, 외국의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 부패방지 관련 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,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1.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
 - 2.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류 및 연수
 - 3.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활동 참가
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면 행 <u><신 설></u>	제23조의2(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) ① 부패방지와 시민의 권 익향상교육 및 연구·개발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청렴교육원을 두고,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 ② 국가청렴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공직자(제2조제3호다목을 포함한다), 일반인 및 외국인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2.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조성 교육 지원3.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. 부패방지 교육에 필요한 연구·개발 및 조사5. 부패방지교육 관련 국제협력사업6. 그 밖에 국가청렴교육원의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사업
	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

제81조(교육과 홍보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 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한 전문적인 연구·개발을 수 행하기 위하여 국가청렴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④ 국가청렴교육원의 조직,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(교육과 홍보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<u><</u>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1조의3(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(이하 "초・중등 학교"라 한다)의 부패방지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

육이 초·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 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 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
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교

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·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·인력·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1조의4(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) ① 위원회는 기업 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실시하 는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・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지원

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
<신 설>

<신 설>

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의5(국제협력의 촉진) 위원 회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, 외국의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 부패방지 관련 조약 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, 부 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 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- 1.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 한 정보교류
- 2.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류 및 연수
- 3.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 한 각종 활동 참가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1조의6(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) (현행 제81조의3과 같음)

<u>제81조의3</u>(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) (생 략)